

이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
기재하여 주십시오.

令和 〇年 〇月 〇日

가나가와현립〇〇고등학교장 귀하

고등학생 등 · 신수학지원금

- ☒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(처음일 때)
고등학생 등 · 신수학지원금 (이하 「신수학지원금」이라 합니다.) 의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
- ☐ 수입 상황 신고서 (2 회차 이후)
이미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으므로, 신수학지원금 지급에 관하여,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한

확인한 후, 2 곳에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- (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, 양쪽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- ☒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- ☒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, 가나가와현의 요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
(아래 빈칸에 학생 본인이 서명하여 주십시오.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. 기입 시에는 별지의 「기입상의 주의」 및 「유의 사항」을 잘 읽은 후 기입하여 주십시오.)

후리가나(읽는 법)	かながわ	XXXXX
학생의 성명	성 KANAGAWA 이름 XXXXX	
학생의 생년월일	平成22 年 8 月 15 日	
학생의 주소	〒231-0021 神奈川県 横浜 市区 中区日本大通り1000	
보호자 등의 전화번호	父090-0000-0000 母080-0000-0000	
보호자 등의 전자 메일 주소	XXXXXXXXXXXX@XXXXX. XX. XX	
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	神奈川県立〇〇学校	

학생의 성명, 후리가나,
생년월일, 주소를 기재하
여 주십시오.

- 【 1 . 고등학교 】
- ※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고등학교 등 ()
 - 고등학교 등에
- 전화번호는, 낮 시간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, 보호자 전원분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전자 메일 주소는, 연락이 가능한 것을 하나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(단, 신수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)

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에 입학 (전입학) 한 날짜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①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	가나가와현립〇〇학교	(이 중 지급 정지 기간 등) ~ 년 월 일 일	①고등학교 (전일제)
②과거에 다른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경우	학교명	~ 년 월 일 일	학교의 종류 · 과정 · 학과

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
【 2 . 학생의 국적·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에 대하여】

(다음의 해당하는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1) 학생 본인의 국적

① ☒ 일본국 이외

(다음의 해당하는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 그리고,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)

(2) 학생 본인의 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

② ~ ⑥ 중 어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②	☐ 정주자	체류기간 (만료일)			
		일본국에 영주할 의사의 유무	☐ 네 (있음) ☐ 아니요 (없음)		
③	☒ 가족 체재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2027 년 5 월 31 일		
		일본국 초등학교의 졸업 유무 등	☐ 졸업했음 ☒ 졸업하지 않았음		
			초등학교명		
		일본국 중학교의 졸업 유무 등	소재지 (도도부현)		
			중학교명		
		일본국에서 취업할 의사의 유무	☐ 네 (있음) ☒ 아니요 (없음)		
④	☐ 특정 활동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
⑤	☐ 유학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
⑥	☐ 기타	체류자격			
	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

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(학생의 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, 다음 ⑦·⑧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학생 본인의 체류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⑦ ☐ 「주민표 사본 (시정촌에서 발행한 것. 원본 복사 불가)」을 첨부합니다.
국적·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이 기재됨

⑧ ☒ 「체류카드 사본」을 첨부합니다.

⑦ ~ ⑧ 중 어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이미 학교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, 이번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【3 .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】

어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(1) 신수학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시기의 구분 (어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☒ 4 월 ~ 6 월 (전년도 of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)	☐ 7 월 ~ 다음 해 6 월 (금년도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)
--	--

(2) 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과세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다음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2) - 1 다음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

① ~ ⑧ 중 어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①	☒	친권자 (부모) 2 명분 학생이 미성년 (18세 미만) 이며, 친권자 (부모) 가 2 년 전제하는 경우
②	☐	친권자 1 명분 ((가)부터 (다)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 (친권자가,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인 경우에는, ⑤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	☐	(가) 친권자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☐	(나) 친권자 중 1 인이 과세 기준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	☐	(다) • 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인인 경우, • 친권자가 존재하지만,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친권자 중 1 인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
③	☐	미성년후견인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고,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분. 다만, 미성년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합니다.)
④	☐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 (이하 「주된 생계 유지자」라 함) (부모 등) 2 명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
⑤	☐	주된 생계 유지자 1 명분 ((가)부터 (다)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	☐	(가)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부모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☐	(나) 주된 생계 유지자 중 1 인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	☐	(다) • 학생이 미성년이지만,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•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으나, 주된 생계 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 •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가 1 인이었던 경우, •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
⑥	☐	학생 본인 •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, 성인에 달한 경우 • 미성년이지만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등

(2) - 2 다음 이유로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

⑦	☐	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 (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) 이지만, 미성년이어서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
⑧	☐	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,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
< 확인 사항 >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□에 체크하여 주십시오.

☒	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의 신청 (신고) 에서 제출한,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나 체류카드 사본 (복사본) 등의 첨부 서류를 사용하여, 신수학지원금의 심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(⑦ 또는 ⑧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)

성명	학생과의 관계	성명	학생과의 관계
KANAGAWA YYYYYY	父	KANAGAWA ZZZZZZ	母

※ 수입의 수정 신고나
공제액의 변경이나
반드시 학교에 연락

보호자 등 (소득 확인 대상자) 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촌민세의 조정
될 수 있으므로

【 4 확인 사항 】 (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,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☒	신수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함과 동시에, 신수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 설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확인한 후,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년 월 일 (학교에서 기입.)

년 월 일

가나가와현립 고등학교장 귀하

고등학생 등 · 신수학지원금

- 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(처음일 때)
고등학생 등 · 신수학지원금 (이하 「신수학지원금」이라 합니다.) 의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
- ☐ 수입 상황 신고서 (2 회차 이후)
이미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으므로, 신수학지원금 지급에 관하여,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합니다.
(위의 두 개의 ☐ 중, 어느 하나의 ☐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(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, 양쪽 ☐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- ☐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- ☐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, 가나가와현의 요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
(아래 빈칸에 학생 본인이 서명하여 주십시오.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. 기입 시에는 별지의 「기입상의 주의」 및 「유의 사항」을 잘 읽은 후 기입하여 주십시오.)

후리가나(읽는 법)				
학생의 성명	성		이름	

학생의 생년월일	년 월 일
학생의 주소	〒 도도 부현 시구 정촌
보호자 등의 전화번호	
보호자 등의 전자 메일 주소	
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	가나가와현립 학교

【 1 . 고등학교 등의 재학 기간에 대하여】 (수입 상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)
※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수학지원금의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·고등학교 등 (수업 연한이 3 년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.) 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
·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 (정시제·통신제 등에 재학한 기간은, 그 월수를 1 개월의 4 분의 3 에 상당하는 월수로 계산.) 이 통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한 자 (단, 신수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)

①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등의 재학 기간	학교명 가나가와현립 학교	년 월 일 ~ (이 중 지급 정지 기간 등) ~ 년 월 일 일	학교의 종류 · 과정 · 학과
②과거에 다른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기간	학교명	~ 년 월 일 일 (이 중 지급 정지 기간 등) ~ 년 월 일 일	학교의 종류 · 과정 · 학과

【2 . 학생의 국적·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에 대하여】

(다음의 해당하는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1) 학생 본인의 국적

① ☐ 일본국 이외

(다음의 해당하는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 그리고,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)

(2) 학생 본인의 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

②	☐	정주자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	
			일본국에 영주할 의사의 유무	☐ 네 (있음)		☐ 아니요 (없음)	
③	☐	가족 체재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	
			일본국 초등학교의 졸업 유무 등	☐ 졸업했음		☐ 졸업하지 않았음	
				초등학교명			
				소재지 (도도부현)			도·도 부·현
			일본국 중학교의 졸업 유무 등	☐ 졸업했음		☐ 졸업하지 않았음	
				중학교명			
				소재지 (도도부현)			도·도 부·현
			일본국에서 취업할 의사의 유무	☐ 네 (있음)		☐ 아니요 (없음)	
④	☐	특정 활동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	
⑤	☐	유학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	
⑥	☐	기타	체류자격				
			체류기간 (만료일)	(서기) 년 월 일			

(학생의 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, 다음 ⑦・⑧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학생 본인의 체류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⑦ ☐ 「주민표 사본 (시정촌에서 발행한 것. 원본. 복사 불가.) 」을 첨부합니다.
국적·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것.

⑧ ☐ 「체류카드 사본」을 첨부합니다.

【3 .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】

(1) 신수학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시기의 구분 (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☐	4 월 ~ 6 월 (전년도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)	☐	7 월 ~ 다음 해 6 월 (금년도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2) 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과세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다음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2) - 1 다음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.

①	☐	친권자 (부모) 2 명분 학생이 미성년 (18세 미만) 이며, 친권자 (부모) 가 2 인 존재하는 경우	
②	☐	친권자 1 명분 ((가)부터 (다)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 (친권자가,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인 경우에는, ⑤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	
		☐	(가) 친권자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	☐	(나) 친권자 중 1 인이 과세 기준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		☐	(다) ・ 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인인 경우, ・ 친권자가 존재하지만,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친권자 중 1 인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
③	☐	미성년후견인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고,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분. 다만, 미성년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합니다.)	
④	☐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 (이하 「주된 생계 유지자」라 함) (부모 등) 2 명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	
⑤	☐	주된 생계 유지자 1 명분 ((가)부터 (다)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	
		☐	(가)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부모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	☐	(나) 주된 생계 유지자 중 1 인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		☐	(다) ・ 학생이 미성년이지만,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・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으나, 주된 생계 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 ・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가 1 인이었던 경우, ・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
⑥	☐	학생 본인 ・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, 성인에 달한 경우 ・ 미성년이지만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등	

(2) - 2 다음 이유로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

⑦	☐	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 (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) 이지만, 미성년이어서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
⑧	☐	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,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
< 확인 사항 >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□에 체크하여 주십시오.

☐	<u>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의 신청 (신고) 에서 제출한,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나 체류카드 사본 (복사본) 등의 첨부 서류를 사용하여, 신수학지원금의 심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(⑦ 또는 ⑧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)

성명	학생과의 관계

성명	학생과의 관계

※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의 경정 결정에 의한 시정촌민세의 과세 소득액 (과세 표준액) 또는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의 변경이나 이혼·사별, 양자 결연 등으로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,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.

【 4 . 확인 사항】 (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,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☐ 신수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함과 동시에, 신수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 설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학교 접수일 년 월 일 (학교에서 기입.)

체류카드 등의 사본 부착 용지

(신수학지원금융)

확인사항 1

학생 성명, 후리가나(읽는 법)를 기입해 주십시오.

학교 명칭	
학교 종류·과정·학과	
학생 성명의 후리가나	
학생 성명	

확인사항 2

- 학생의 국적·체류자격·체류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아래에 풀로 붙여 주십시오.
-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풀로 붙이지 말고, 이 용지와 함께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.

□주민표 사본의 원본

- 고등학생 등 신수학지원금의 신청 (신고) 을 위해 학생의 국적·체류 자격·체류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또한 가나가와현고등학생등장학금부금의 심사에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풀로 붙이기

앞면

풀로 붙이기

뒷면